



제429회 국회 (정기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국가결산보고서에 대한 감사의견 포함〉

■ 정동만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344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국가결산보고서에 대한 감사의견 포함 (안 제60조 및 제61조)	3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정동만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9. 29.

다. 회 부 일 : 2025. 9. 3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사원이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하여 검사 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 재무제표 등에서 오류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어 감사원의 부실 검사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감사원 검사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감사원의 검사 보고서에 국가결산보고서에 대한 감사의견을 포함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가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할 때 감사원이 송부한 검사 보고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감사원 검사 사무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0조 및 제61조).

Ⅲ. 검토의견

1.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국가결산보고서에 대한 감사의견 포함 (안 제60조 및 제61조)

현행	개정안
○ 결산검사(§60) - 감사원은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하고 <u>그 보고서</u>를 다음 연도 5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함 ○ 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제출(§61) - 정부는 제60조에 따라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 <u><후단 신설></u>	○ 결산검사(§60) - 감사원은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하고 <u>감사원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검사 보고서</u>를 다음 연도 5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함 ○ 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제출(§61) - 정부는 제60조에 따라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 <u>이 경우 제60조에 따른 감사원의 검사 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u>

「국가회계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르면 국가결산보고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매 회계연도마다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작성한 중앙관서결산보고서를 통합하여 작성하는 국가 전체에 대한 결산보고서로, 결산 개요, 세입세출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로 구성됨.¹⁾

1) 제13조(결산의 수행) ①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제14조·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결산보고서(이하 “중앙관서결산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중앙관서결산보고서를 통합하여 국가의 결산보고서(이하 “국가결산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결산보고서의 구성) 결산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된다. <개정 2024. 3. 26.>

1. 결산 개요

2. 세입세출결산(중앙관서결산보고서 및 국가결산보고서의 경우에는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을 포함하고, 기금결산보고서의 경우에는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을 말한다)

3. 재무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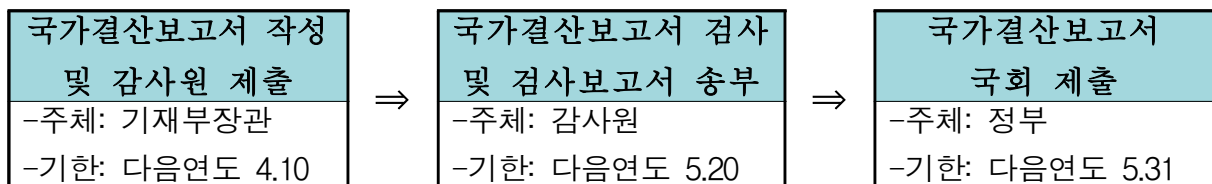
가. 재정상태표

나. 재정운영표

다. 순자산변동표

현행 「국가재정법」 제59조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제60조는 감사원이 해당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하여 그 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도록 하며, 제61조는 정부가 감사원의 감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²⁾

[국가결산보고서 작성·제출 절차]



그런데 감사원 감사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결산보고서 재무제표상 오류가 다수 발견되고 있어, 감사원 검사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2년까지 국가재무제표 전기오류수정손익³⁾은 총 148.6조원에 달하며, 특히 2022년에는 53.6조원의 대규모 전기오류수정손익이 발생한 바 있음.⁴⁾⁵⁾

라. 현금흐름표

4. 성과보고서

2) 제59조(국가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0조(결산검사) 감사원은 제59조에 따라 제출된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하고 그 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61조(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제출) 정부는 제60조에 따라 감사원의 감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이전 회계기간의 재무제표 작성 시 발생하였던 부적당한 회계처리를 당 회계연도에 반영하여 수정하는 것

4) 국회예산정책처, 「2022회계연도 결산 총괄분석 I」, 2023.7., p.214-239

[2012~2022 국가재무제표 상 전기오류수정손익 발생 현황]

(단위: 조원)

구분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계
전기오류수정이익	5.9	2.8	9.0	7.5	3.7	6.4	5.0	2.6	3.4	2.7	40.3	89.3
전기오류수정손실	6.7	1.6	4.6	4.4	3.6	9.5	3.8	4.3	5.6	1.9	13.3	59.3
합계	12.6	4.4	13.6	11.9	7.3	15.9	8.8	6.9	9.0	4.6	53.6	148.6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2022회계연도 결산 총괄분석 I」, p.215

이에 개정안은 감사원의 국가결산검사 보고서에 국가결산보고서에 대한 감사의견을 포함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가결산보고서 국회 제출 시 감사원의 검사 보고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감사원 검사의 정확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현재 감사원의 검사보고서는 헌법에 따라 감사원이 직접 국회에 제출하고 있어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를 별도로 국회에 재제출할 필요성이 낮을 것으로 보임.

「대한민국헌법」 제99조는 감사원이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고,⁶⁾ 이에

5) 한편 감사원은 감사원의 결산검사가 국가재정 및 자산의 규모(62개 기관, 약 3,218조원)와 법정 시한을 감안하여 전수조사가 아닌 주요 계정에 대한 샘플링 검사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검사 후 재무제표에 일부 오류가 있을 수는 있으나, 회계의 기본적 원칙인 중요성 기준에 비추어 재무제표 전반의 적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수준의 오류는 그간 없었다는 의견임.

6) 제99조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따라 감사원은 매년 5월 말에 직전 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있음.

[최근 5년간 감사원 결산검사결과 국회 보고 현황]

연도	내용	제출자	제출일
2021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보고	감사원장	2021.5.31.
2022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보고	감사원장	2022.5.31.
2023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보고	감사원장	2023.5.31.
2024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보고	감사원장	2024.5.30.
2025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보고	감사원장	2025.5.30.

자료 : 의안정보시스템

둘째, 현행 「감사원법」상 감사원 검사보고서에 이미 국가결산 보고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의견이 일정 부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현행 「감사원법」 제41조는 검사보고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①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의 확인, ②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금액과 한국은행이 제출하는 결산서의 금액과의 부합 여부, ③ 회계검사의 결과 법령 또는 예산에 위배된 사항 및 부당 사항의 유무, ④ 징계 또는 문책 처분이나 시정·개선을 요구한 사항 및 그 결과 등을 열거하고 있음⁷⁾.

7) 제41조(검사보고 사항) 「헌법」 제99조에 따라 작성하는 검사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의 확인
2.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금액과 한국은행이 제출하는 결산서의 금액과의 부합 여부
3. 회계검사의 결과 법령 또는 예산에 위배된 사항 및 부당 사항의 유무
4. 예비비의 지출로서 국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것의 유무
5. 유책(有責) 판정과 그 집행 상황

위의 사항들은 국가결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원의 판단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현재도 감사원이 국가결산보고서에 대한 감사의견을 일정 부분 표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셋째, 감사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추가하려는 경우 「감사원법」을 함께 개정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상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포함되는 사항과 별도로 국가결산보고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의견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감사원법」 제41조에서 감사보고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열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감사원법」 제41조를 함께 개정하는 것이 법체계에 부합한다고 보임.

기획재정부는 현행 감사원 감사보고서에도 오류의견 등이 이미 포함되어 있어 감사보고서와 감사의견서의 차별성에 의문이 있고,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 국가결산보고서와 별도로 결산검사보고서를 작성·제출 중으로, 결산검사보고서 작성 주체인 감사원이 이를 직접 제출하는 것이 감사원의 책임과 독립 취지에 부합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6. 징계 또는 문책 처분을 요구한 사항 및 그 결과
 7. 시정을 요구한 사항 및 그 결과
 8. 개선을 요구한 사항 및 그 결과
 9. 권고 또는 통보한 사항 및 그 결과
 10. 그 밖에 감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감사원은 미국 GAO(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등 외국의 일부 최고 감사기구의 경우 행정부처에 대한 처분요구 권한이 없어 간접적으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의견표명을 하고 있으나, 감사원은 회계오류 발생 시 「감사원법」상 행정부처에 대한 처분요구 권한⁸⁾에 따라 직접 회계오류를 수정하고 있으므로 의견표명 도입의 실효성이 없으며, 감사원 의견을 포괄적·단정적으로 명시할 경우 오히려 국회 결산 심의 절차와 권한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의견을 제출함.

8) 「감사원법」 제33조(시정 등의 요구) ① 감사원은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에는 소속 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주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가 있으면 소속 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은 감사원이 정한 날까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0조(결산검사) 감사원은 제59조에 따라 제출된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하고 <u>그 보고서를</u> 다음 연도 5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60조(결산검사) ----- ----- ----- <u>감사원의 감사의견을</u> <u>포함한 검사 보고서</u> ----- ----- -----.
제61조(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제출) 정부는 제60조에 따라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61조(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제출) ----- ----- ----- ----- ----- <u>. 이 경우 제60조에 따른 감사원의 검사 보고서를</u> <u>함께 제출하여야 한다.</u>

문의처

02)6788-5160